

산업체근무학생 학사관리 규정(3-5-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체 근무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를 변경·보완하여 수업일수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국·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2.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3.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4. 의료기관
5.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6.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제3조(수업일수) ① 산업체 근무학생은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숙직, 잔업처리로 인한 야근, 비상대기 등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장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별지서식)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체 근무학생의 수업은 일반학생에 준하여 시행하되 교과진도 상황에 따라 과제물 등 재택학습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위 1, 2항을 합하여 수업일수 1/5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0. 9)

제4조(학점인정) ① 산업체 근무학생은 학점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2학점씩 총 16학점까지 산업체 근무성적에 의거 졸업학점(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체 근무성적의 학점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추가시험) 산업체 근무학생이 당해 기관장이 인정하는 근무 등의 사유로 중간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8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